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3.28(목)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 4. 16(화)

다. 상정일자 : 2013. 4. 16(화)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과장)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두장)

-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 1.15일 제정된 조례로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면적 및 보상기준은 지금까지 8년간 330m², 30만원미만이었으나 제외기준을 축소하여 보상범위를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영세농가는 물론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제적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330m²”를 “100m²”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만원”을 “5만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